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0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신원식·김승수·김영식

성일종 • 박대출 • 한기호

유상범 · 김기현 · 권명호

지성호 • 박 진 • 윤두현

윤주경 • 곽상도 • 강대식

이만희 · 조수진 · 하영제

서병수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 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3제1항)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호"를 "제1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3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분할	제31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분할
복무)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	복무) ①
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	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	
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	
게 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2호</u> 및	<u>제1호의 경</u>
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	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
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	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제2호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